비조치의견서 (☑비조치 □조치 □기타)

	담당 부서	IT검사국	담당자 (직위, 성명)	김진원 검사역	연락처	02-3145-7429
요청대상 행위	□ 금융회사가 다음과 같이 VDI(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 제1항 제5호를 준수하는지 여부 ○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이하 '전산실 단말기')는 '전산실 접속용 VDI'를 통해 전산실 내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구성하고, '전산실 단말기'와 '전산실 접속용 VDI'는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서만 파일 송수신 가능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이하 '업무용 단말기')은 '내부 통신망' 접속용 VDI'를 통해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고, DMZ 영역에 위치한 별도의 '인터넷 접속용 VDI'를 통해 외부 인터넷망에 접속하도록 구성하고 '업무용 단말기'와 '내부통신망 접속용 VDI'는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서만					
	파일 송수신 가능 * 그룹웨어, 결재시스템 등 ○ '전산실 단말기'와 '업무용 단말기'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전산실 접속용 VDI'와 '내부통신망 접속용 VDI' 또한 각각 별도의 VDI 장비를 사용하는 등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 * '전산실 단말기'와 '업무용 단말기' 간, '전산실 접속용 VDI'와 '내부통신망 접속용 VDI' 간 데이터 송수신은 불가능					
판단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 규정」제15조제1항제5호).					
	'전 사	선산실 접속용 VDI	'와 '내부통^ 로 네트워크	신망 접속용 V 가 분리되어 9	VDI' 또한 있을 경우	전히 분리되어 있고 한 별도의 VDI장비를 「전자금융감독규정」

- 다만, VDI(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제15조 제1항 제5호 외의「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수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 제2항 참조)
 - 1.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나.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
 - 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